

# 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추천 요령

통합공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추천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8년 1월 6일

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장

## 제 1조(추천 대상품목)

통합공고 별표 2의 품목별 수입요령상 해당품목으로 한다.

## 제 2조(수입 추천대상자)

석유수입 추천대상자는 석유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수출입업을 등록한 자(이하 "석유수출입업자"라 한다)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.

- ① 원유, 휘발유·등유 및 그 조제품, 경유, 중유 : 석유수입업자
- ② 프로판 및 부탄 :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수입 계약승인을 받은 자

## 제 3조(포괄추천)

- ① 협회장은 수입추천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월단위로 수입물량을 유종별로 포괄추천할 수 있다.
- ② 포괄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의 유종별 수입 계획을 전월말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포괄추천을 받은 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수입실적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협회장은 포괄추천을 받은 자의 수입계획이 변경되어 당해월에 수입 추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추천한다.

## 제 4조(추천검토사항)

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 추천한다.

- ① 연도별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
- ②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항 각호 및 동조 제 3항의 업체별 계획
- ③ 기타 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 등

## 제 5조(구비서류)

- ① 수입추천신청서 3부
- ② 물품매도확약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(포괄추천시 생략)
- ③ 수입대행계약서 1부(수입대행시에 한함.)
- ④ 월별 유종별 수입계획서 1부(포괄추천시에 한함.)

## 제 6조(수입추천서의 반납)

수입추천서 재발행 신청시와 수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추천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## 제 7조(처리기간)

추천서 접수후 8근무시간 이내로 한다.

## 제 8조(보고)

협회장은 월별 및 매 분기별 수입추천실적을 매 익일 및 매분기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
부칙

## 제 1조(시행일)

본 요령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